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8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3. 3.

발 의 자 : 김승원 · 양정숙 · 이병훈
이상직 · 이규민 · 양경숙
박광온 · 홍성국 · 한병도
임호선 · 서영교 · 박 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·관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,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전의 양상과 정도가 다른 만큼 학교시설에 요구되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률적인 관리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.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·학부모·교직원의 건강·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·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. 또한 그

절차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(안 제4조의4).
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4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4(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특례)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(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·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(이하 “대도시”라 한다)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유지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·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,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</u>

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의
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
및 식품위생 관리기준을 설정
·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
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
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
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
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